

부산대학교 체육시설물 관리 규정

제정	규칙 제	호
개정	규칙 제	호
개정	규칙 제	호
다 개정	규칙 제	호
개정	규칙 제	호

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체육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정의 이 규정에서 체육시설물이란 부산대학교에 축조된 대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등을 말한다

적용범위 이 규정은 체육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적용된다

관리운영의 원칙 체육시설물은 체육부에서 관리하며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모든 사항은 부산대학교 체육시설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

위원회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체육시설물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

-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명 이내로 구성한다
- ② 위원장은 체육부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
- ③ 위원은 캠퍼스기획부처장 체육교육과장 학생부처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
-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
-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

심의·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

- 규정의 제·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- 기본적인 사업계획과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
-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- 체육시설물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체육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사용과 원상복구 ① 체육시설물은 체육수업 운동선수의 훈련과 체육행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

② 체육시설물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가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

교내 사용허가와 절차 교내 사용허가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육교과수업과 운동선수의 훈련을 제외한 사용 일과 후 공휴일 포함은 교내 체육시설물 사용신청 전산망을 통한 신청과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

교과운영 수업시간표에 따라 체육시설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

일반학생 교과운영 선수훈련 교직원 사용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

허가된 시설물을 사용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체육시설물의 전체나 일부를 행사 종료 시까지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

체육시설물은 교과수업과 선수 교직원 재학생의 운동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교과수업과 선수훈련은 수업시간표와 훈련일정표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물 사용 목적이 학생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체육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

교외 사용허가와 절차 ① 외부기관에 대한 교내 체육시설의 사용은 교과수업활동과 교내 체육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무료나 유상으로 허가 할 수 있다

② 외부기관은 부산대학교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문서로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

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체육시설물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

교과수업과 선수훈련 각종 교환경기 대회

교직원과 학생단체 체육행사

효원 동문 주관행사

공공기관과 경기단체

일반 시민단체

사용허가의 취소 체육시설물 사용 중 모든 준수사항과 체육시설물 사용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

사용 및 운용시간 체육시설물의 사용과 운영시간은 상황에 따라 체육시설물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